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 가.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1.12.23.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및 당연직 위원 일부삭제 (안 제12조)
-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13조)
-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개정 (안 부칙 제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2조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항의 위원 구성을 기존 7명(당연직 4명, 위촉직 3명)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제5항에 외부전문가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개정하였음. 다만, 위촉직 위원의 비율을 늘린 「정보공개법」 제12조제3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 23일로, 부칙에 안 제12조제5항의 시행일을 이에 맞추도록 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당연직 위원의 임기와 위촉직 위원의 임기, 해촉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부칙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별표3 수수료를 개정한 것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이 또한 시행일이 2021년 12월 23일로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우리 구의 정보공개수수료를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적기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91 호
----------	---------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1.12.23.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 및 당연직 위원 일부삭제(안 제12조)
- 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3조)
- 다.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개정(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2021. 9. 9. ~ 9. 29.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간사1명”을 “간사 1명”으로,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위원: 행정지원국장, 민원여권과장
2. 위촉직 위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을 “위촉직”으로, “하며, 한”을 “하되,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별표 비고 제1호 중 “전자파일 복제”를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생략)</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u>포함한 7명 이내로 하고 당연직인 소속공무원 4명과 위촉직인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u> &lt;단서 신설&gt;</p> <p>③·④ (생략)</p> <p>⑤ <u>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u></p> <p>⑥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p>	<p>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u> ----- ----- ----- . <u>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⑤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u>당연직위원: 행정지원국장, 민원여권과장</u></p> <p>2. <u>위촉직 위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자</u></p> <p>⑥ -----</p>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2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 간사 1명-----  
----- 담당 팀장이 --.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  
-----  
-----  
-----  
----- 하되, 한 -----  
----- .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